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12. . (제 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12.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철도경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2명, 9급 3명), 지방항공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12.6.~12.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022”를 “1,013”으로, 일반직 계 “1,012”를 “1,00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983”을 “97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42”를 각각 “2,52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2,533”을 “2,514”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9명(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3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7조제1항 관련)

1. 국토교통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철도국 1개 과	3명
2) 주택토지실 1개 과	4명
3) 모빌리티자동차국 1개 과	2명

2.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철도경찰(철도특별사법경찰대)	18명
2) 철도경찰(철도특별사법경찰대)	6명
3) 지하안전관리(지방국토관리청)	2명
4) 건설현장 안전점검(지방국토관리청)	13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한시정원) ① (생 략)	제59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4</u> <u>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6에 따 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 다.	② ----- ----- ----- ----- <u>2026</u> <u>년 12월 31일</u>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022</u>		<u>1,013</u>	-9	
일반직	.	계	.		.		
	.		.		.		
			<u>1,012</u>		<u>1,003</u>	-9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83</u>		<u>974</u>	-9	
	.		.		.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2,542</u>	• <u>2,523</u>	-19
일반직 계	<u>2,542</u>	<u>2,523</u>	-19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533</u>	<u>2,514</u>	-19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0